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1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3월 19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,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지원신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바.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,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기가구”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,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.
2. “복지사각지대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3. “사회보장”이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사회보장급여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, 현물,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.
5. “지원대상자”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자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

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
2.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**제5조(신고 의무 등)** ① 누구든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,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등)**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·재산·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

**제7조(민관협력)**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**제9조(정보의 보호)**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| 위기가구지원 신청서   |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--|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|
| 신청인  | 성명   |         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    |      |      |
|  | 주소   | (전화 : )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가족사항   | 관계   | 성명      | 주민등록번호 | 직업     | 월소득 | 건강상태 | 동거여부 |
|  |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 |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 |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주거실태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원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(보증금   만원/월   만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무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 | 구체적인<br>주거상황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소득   | 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일반재산   | 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금융재산   | 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조사자의견  | (지원필요사유)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
| <p>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</p> <p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사자 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확인자 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</p> <p><b>동작구청장   귀하</b></p> |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|      |